

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44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박춘선, 강석주, 고광민,  
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 
김영철, 김원중, 김원태,  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 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 
남창진, 민병주, 박성연,  
신동원, 윤종복, 이상욱,  
이성배, 이숙자, 이영실,  
이용균, 이종태, 이종환,  
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 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34명)

## 1. 제안이유

- 기후위기, 생물다양성 감소 등 복합적인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행정 주도의 일회성 정책을 넘어,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.
- 그동안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과 거버넌스 활동이 단발적·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어,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관 협력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.
- 이에 본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교육 체계를 강화하고자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에 ‘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’를 추가하여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제2항).

나.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의 업무에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을 추가하여 민·관·시민사회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조성함(안 제12조제2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10. 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

제1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5.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0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12조(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</u></p> <p>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환경교육계획에 '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'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(이하 '센터'라 함)의 업무내용 중 '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'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
- 통상적으로 기존 조례에 따라 주기적·의무적으로 수립·시행하는 환경교육계획에 일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, 센터의 현재 수행 중인 업무내용에 추가사항이 포함<sup>1)</sup>되어 있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권 봉 수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hibedoge06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1)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(www.seec.or.kr) 직원구성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대외협력사업 및 환경교육 연계지원 (서울환경교육 플랫폼, 관계자 워크숍, 지역 거버넌스 협의회, 환경교육주간 등)과 관련한 사항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